
제23차 實行理事會

일시 : 1985. 9. 27(금) 08:00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자보환자 진료비 지급업무 개선대책

자동차보험 본사에서 각지점으로 진료비가 제대로 영달되지 않고 있으며 진료비가 종결되면 1개월내에 진료비를 지급토록 본회가 자보측에 촉구한데 대해 자보측은 자보 각 지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등 무성의한 회신이 있었으므로 본회는 이에 보다 강력히 대처키 위해 대책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인선은 회장단에 위임 처리키로 하다.

2. 가정의 수련교육 대책

가정의 수련병원 지정 기준의 2개 안을 토의끝에 본회는 단일안을 채택, 건의키로 협의하되 가정의의 주기능이 1차 진료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기존 수련병원 뿐만아니라 중소규모 병원까지 포함하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문안은 회장단에 위임, 작성 제출키로 협의하다.

3. 정신보건법안에 대한 본회 의견제시

정신보건법 입법예고안중 종합병원을 개설할 때는 정신과 병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2백병상 미만의 중소규모 병원은 대부분 정신과 설치와 정신과 전문의의 채용이 불가능하며, 현재 병원신임위원회가 적용하고 있는 수련병원 지정요건에서도 2백병상 이상의 레지던트 수련병원에만 정신과 설치와 정신과 전문의 채용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므로 2백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조정함이 시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일반 민간종합 병원에 대하여 정신과 병실 설치를 명할 경우 외국에서와 같이 정부의 국고보조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키로 하다.

4. 병원 세탁물 관리대책

병원의 세탁물은 외국에서와 같이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용역업자가 병독오염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을 철저히 분리 세탁하도록 관리상의 의무조항을 부과하는 문제를 실태조사 후 대정부 건의의 의견에 반영키로 하다.

제24차 實行理事會

○일시: 1985. 10. 11(금) 08:00

○장소: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요양급여기간 180일 초과자 관리대책

보사부 방침에 의거 요양급여기간(180일) 초과자가 발생하면 초과급여액은 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환수하지 말고 피보험자에게 직접 환수하도록 지시됨에 따라 급여기록란에 「00년도 급여기간 초과자」라고 주서또는 날인하는 문제는 요양급여기관에서 최대한으로 협조토록하고 진료비를 통일해서 징수하는 문제는 병원의 경영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다.

(승인사항)

1. 제 5차 의료보험 해외연수계획 승인

연수대상기관을 대학부속병원 외에 중소규모병원도 포함시키고 참가자는 귀국후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것을 요청기로 하고 연수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25차 實行理事會

○일시: 1985. 10. 18(금) 08:00

○장소: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환자권리선언 토론자 추천 대책

'85. 11. 2 소비자 시민의 모임 주최로 개최되는 환자권리선언토론회에 본회의 공식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에 참석할 토론자를 추천 요청한데 대하여 이미 공식적인 본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보사부와 의협의 의견도 제시 되었으므로 이 회의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보며 자칫 주책의 의도에 말려들 우려가 있으므로 본회는 토론자 추천을 유보기로 협의하다.

(승인사항)

1. 홍준식박사 초청 병원장 간담회개최

이 간담회의 참석범위를 재경 및 경인지역 병원장으로 제한하지 말고 가급적 참석을 희망하는 병원장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전지역으로 확대, 공문으로 참석자를 파악하여 필요시 장소를 재조정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다.

*